

2014년 12월 23일

제50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년도 제50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1. 회의개요

① 회의일시 : 2014년 12월 23일(화), 16:30~20:00

② 회의장소 : 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③ 출석임원

- 이사회 의장 : 정 재 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이 사 : 최 승 호 (동신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김 성 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사무관 대리참석)
박 경 문 (홍익대학교 바이오화학공학부 교수)
박 명 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백 강 수 (법무법인 하나로 대표변호사)
안 현 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양 승 한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이 상 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이 종 각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최 선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재적이사 15명 중 11명 참석
- 감 사 : 이 중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감사)

④ 불참인원

- 이 사 : 조 규 홍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김 창 경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김 형 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최 광 숙 (서울신문 논설위원)

⑤ 상정안건(총 7건)

가. 보고안건 : 3건

- 제1호 제49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안)
- 제2호 제10회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안)
- 제3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 신설 보고(안)

나. 의결안건 : 4건

- 제1호 2015년도 업무계획(안)
- 제2호 2015년도 예산(안)
- 제3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관 개정(안)
- 제4호 감사규정 개정(안)

⑥ 소관부서 :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실·기금관리팀(TF), 감사실

2. 논의 결과(요지)

□ 보고안건 제1호 : 제49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안)

① 안건주요내용

○ 개최 개요

- 일 시 : 2014. 11. 25(화) 07:30
- 장 소 : 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 참석자 : 재적이사 15명 중 11명 및 감사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구 분	안건명	심의결과
보고안건	제1호 제48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안)	원안접수
	제2호 KIAT 경영기획본부 직제 개편 보고(안)	원안접수
	제3호 KIAT3.0 추진현황 보고(안)	원안접수
	제4호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계획(안)	원안접수
	제5호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 박람회 개최 계획(안)	원안접수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별도 의견 없음

③ 논의결론

- 원안접수

□ 보고안건 제2호 : 제10회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안)

① 안전주요내용

○ 개최 개요

- 일 시 : 2014. 12. 8(월), 14:00 ~ 15:30
- 장 소 : 한국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최승호 동신대 교수, 박경문 홍익대 교수, 안현실 한국
경제신문 논설위원, 양승한 경북대 교수

○ 심의안건 및 결과

구분	안전명	심의결과
제1호	제1호 2015년도 업무계획(안)	수정의견(2건)
제2호	제2호 2015년도 예산(안)	수정의견(1건)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중장기전략에 따른 2015년도 업무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매칭시킨 연계도 필요
- 2015년도 업무 추진방향의 전략목표 및 과제명을 중점추진업무에 맞도록 변경 필요

③ 논의결론

- 원안접수

□ 보고안건 제3호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 신설 보고(안)

① 안건주요내용

가. 개요

- 기술료가 예산총계주의에 편입됨에 따라, 기술료를 그 징수목적인 산업기술 R&D 재투자 및 장려·촉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 신설
- * 기금 신설 근거가 포함된 산촉법 개정('14.12.2) → 공포·시행('15.1.1)

나. 세부내용

- (설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기금의 설치)
- * '특정물질 합리화기금'(대체물질 개발·상용화 지원)을 동 기금으로 통합
- (운영) 산업부가 기금관리주체가 되고, KIAT가 위탁기관으로 지정,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주요사항 심의
- (재원) 기술료(산업기술혁신계정)와 특정물질제조사용 부담금(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등을 주 재원으로 활용
- (사용) 기술료 징수목적에 부합하도록 R&D 재투자·장려촉진 관련 사업에 '15년부터 연간 1,000억원 규모로 기금사업 추진
- * R&D재투자사업 10개(955억원), 특물사업사용합리화사업 4개(42억원)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별도 의견 없음

③ 논의결론

- 원안접수

□ 의결안건 제1호 : 2015년도 업무계획(안)

① 안전주요내용

가. 개요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승인 받기 위한 업무계획(안)을 수립

나. 세부내용

- (글로벌 창의·융합 혁신기반 조성) 고용연계형 인력양성 추진, 소재부품 및 산업기술 인프라 체계적 구축, 기업중심 국제협력 기능 강화
- (창조경제형 중견·중소기업 지원강화)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고도화,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중견·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정책혁신) 선도적 정책기획 기능 강화, 시장 중심의 중장기 기술전략 수립, 산업기술 문화확충 및 신사업 발굴
- (지식기반의 조직역량 강화) 창의적·생산적인 기관운영의 체계 구축, 사업관리 내실화 및 자금운용·관리 체계 확보, 고객감동 경영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중장기전략목표와 추진업무가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계도를 간단하게 정리 필요
 - 왼편에 중점추진업무와 오른편에는 중장기전략목표를 배치하되, KIAT사업 중 핵심사업을 선별하여 도표로 제시

③ 논의결론

- 제10회 전문위원회 수정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 의결안건 제2호 : 2015년도 예산(안)

① 안건주요내용

가. 수입 및 지출 예산 편성 개요

- (수입예산) ①수탁사업 인건비 및 간접비, ②출연금, ③기금관리비, ④사업외 수입으로 구성하여 수입예산 편성
 - 인건비는 '14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입하여 편성하고, 간접경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에 따라 편성
 - 출연금은 경영기획본부 인건비, 사무실관리비 등으로 편성하고, 기금관리비는 기금관리부서 인건비, 기금관리비로 편성
- (지출예산) ①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운영비), ②기금관리비, ③센터관리비, ④예비비로 지출예산 편성
 - 인건비는 '15년도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경상운영비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편성
 - 기금관리비 : 기금운용 및 평가, 사업 관리 등의 비용 편성
 - 센터관리비 : 세금 및 센터유지 보수 등 관리비용 편성
 - 예비비 : 경영평가성과급, 증원예비비로 편성

나. '15년도 기관운영예산 수지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			구분	지출		
	'15년도	'14년도	증감		'15년도	'14년도	증감
1. 수탁사업 수입	27,272	28,874	△1,602	1. 기관운영비	29,832	29,889	△57
1) 인건비	17,931	18,044	△113	1) 인건비	20,304	20,361	△57
2) 간접비	9,341	10,830	△1,489	2) 경상운영비	9,528	9,528	-
2. 출연금	3,405	3,405	-	2. 출연금	-	1,295	△1,295
1) 인건비	1,826	1,570	256	1) 기획평가관리비	-	1,295	△1,295
2) 기획평가관리비	-	1,295	△1,295				
3) 경상운영비	1,579	540	1,039				
3. 기금관리비	1,014	-	1,014	3. 기금관리비	467	-	467
1) 인건비	547	-	547	1) 기금관리비	467	-	467
2) 기금관리비	467	-	467				
4. 사업외 수입	716	747	△31	4. 센터관리비	506	479	27
1) 임대수입 및 기타부대수입	506	497	9	1) 센터관리비	506	479	27
2) 이자수입	210	250	△40				
				5. 예비비	1,602	1,362	240
				1) 경영성과급	725	754	△29
				2) 봉급예비비	877	608	269
합계	32,407	33,026	△619	합계	32,407	33,026	△619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별도 의견 없음

③ 논의결론

- 제10회 전문위원회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 의결안건 제3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관 개정(안)

① 안건주요내용

가. 개정사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14.12.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의 관리·운용기관을 KIAT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수행사업을 조문에 반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설치)

나. 개정내용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업을 신설 (제23조제1항제17호)

< 개정 신규대비표 >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4장 사업 제23조(사업)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6. (생략) <u><신 설></u>	제4장 사업 제23조(사업) ① (좌동) 1-16. (현행유지) 17. <u>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의 관리 및 운용</u> ② (현행유지)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의 KIAT 위탁에 따라 반영
② (생략) <u><신 설 ></u>	<u>부 칙(2015. 00. 00)</u>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산업부장관의 개정승인 일자룰 기준으로 개정시행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별도 의견 없음

③ 논의결론

-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4호 : 감사규정 개정(안)

① 안건주요내용

가. 개정사유

-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비('14.4) 및 산업R&D자금 부정 사용 방지대책에 따른 요구사항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제37조의2, '14.4)에 의한 반영

나. 개정내용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의 출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일상감사의 범위에 추가(제22조제1항제3호 신설 및 별표1 개정)
- 산업부, R&D전담기관, 연구수행기관 등이 연루된 비리행위를 수시 점검하기 위해 “직무감찰관” 제도 신설(제19조 신설)
- 특정감사 범위에 사업비점검에 대한 근거 추가(제4조, 제8조)
- 감사활동과 관련된 자문을 위한 감사실무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 추가(제18조 신설)

< 개정 신규대비표 >

현행	개정안	비고
제4조(감사의 종류) (생략) 1. (생략)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써, 감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부감사관련 기관장 또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3.~6. (생략)	제4조(감사의 종류) (현행유지) 1. (현행유지)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써, 감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부 감사관련 기관장 또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실시하며, <u>산업기술혁신사업 등 정부위임사업의 과제기획, 평가관리, 사후관리 업무의 사업비관리점검도 포함한다.</u> 3.~6. (현행유지)	감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감사활동 유도

현행	개정안	비고
<p>제8조(감사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진흥원의 <u>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u></p> <p>3.~6. (생략)</p> <p>②~③ (생략)</p>	<p>제8조(감사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좌동)</p> <p>1. (현행유지)</p> <p>2. 진흥원의 <u>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산업기술 R&D 종합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u></p> <p>3.~6. (현행유지)</p> <p>②~③ (현행유지)</p>	<p>접근·활용 대상 시스템의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p>
<p>제3장 감사지원부서 제12조~제17조 (생략)</p>	<p>제3장 (좌동) 제12조~제17조 (현행유지)</p>	
<p><u><신 설></u></p>	<p><u>제18조(감사실무위원회) ①</u> 감사지원부서의 장은 감사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 감사결과 검토 및 조치요구 사항의 적정성·공정성·객관성 여부 등에 관한 자문을 받기위하여 <u>감사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지원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지원부서 직원과 매 회의 시 마다 감사지원부서장에 의해 지명되는 <u>준감사인(내부 회계전문가, 감사부서 근무경력자 및 제14조에 의한 감사지원부서 직원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감사지원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과 외부감사인(위촉감사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준감사인 및 외부감사인 총 인원수는 안전의 중요성 및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5인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감사지원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감사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p>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p> <p>1. 제19조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관한 사항</p> <p>2. 종합감사, 특별감사 등의 지적사항에 관한 사항</p> <p>3. 기타 감사지원부서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별도로 지시한 사항</p> <p>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지원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p>	
<p><u><신설></u></p>	<p>제19조(직무감찰관의 지정 및 역할) ① 감사지원부서의 장은 직무감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진흥원, 연구수행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루된 비리행위(이하 “비리행위”라 한다.)를 감찰하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p> <p>1. 비리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홍보에 관한 사항</p> <p>2. 비리행위 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p> <p>3. 비리행위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p> <p>4. 기타 비리행위 처리와 관련된 사항</p> <p>② 제2항과 관련하여 직무감찰관은 전결권을 행사하여 비리행위 접수 및 처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p> <p>③ 원장은 직무감찰관 및 담당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 현장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p>	<p>감사 기능을 추가 및 방법을 명확하게 표현</p>
<p>제18조~제19조 (생략)</p>	<p>제20조~제21조 (현행유지)</p>	<p>조번 변경</p>
<p>제20조(일상감사)</p> <p>①~② (생략)</p> <p>1.~2. (생략)</p>	<p>제22조(일상감사)</p> <p>①~② (현행유지)</p> <p>1.~2. (현행유지)</p>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3.~5. (생략)	3. <u>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 금의 출납 및 결산에 관한 사항</u> 4.~6. (현행유지)	일상감사 범위 추가· 확대
제21조~제24조 (생략)	제23~제26조 (현행유지)	조번 변경
제25조(감사결과 통보) ①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 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 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결과 통보) ① (현행유지) ②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 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 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 다.	오류 문구 삭제
제26조~제32조 (생략)	제28조~제34조 (현행유지)	조번 변경
제6장 보 칙 제33조~제35조 (생략)	제6장 (좌동) 제35조~제37조 (현행유지)	
<신설>	부 칙(2014.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사회 의결 일자 기준으로 개정 및 시행
<별표1>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1. 일상감사의 범위 1)~3) (생략) <신설> 4) (생략) 가.~다. (생략) 라. 지식경제부 등 유관기관 에서 위임받아 별도 회계 처리되는 각종 기금 및 자금의 출납 5)~12) (생략)	<별표1> (좌동) 1. (좌동) 1)~3) (현행유지) 4) <u>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 진기금의 출납 및 결산에 관한 사항</u> 가. <u>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u> 나. <u>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u> 다. <u>기타 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중요사항</u> 5) (현행유지) 가.~다. (현행유지) 라. <u>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에서 위임받아 별도 회계처리되는 각종 기금 및 자금의 출납</u> 6)~13) (현행유지)	일상감사 범위 추가 용어의 정정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개정안의 직무감찰관 지정 및 역할에 대한 직무감찰관 제도의 도입이행이나 실질적 기능 등 중요도를 감안하여 보칙(본칙의 내용을 보조)의 내용을 본칙으로 이동 필요
 - (당초) 제6장 보칙, 제37조(직무감찰관의 지정 및 역할) → (변경) 제3장 감사지원부서, 제19조(직무감찰관의 지정 및 역할)

③ 논의결론

- 수정의결

3. 제50회 정기이사회 참석자 서명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50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구분	안건명	회의결과
보고안건	제1호 제49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안)	원안접수
	제2호 제10회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안)	원안접수
	제3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 신설 보고(안)	원안접수
의결안건	제1호 2015년도 업무계획(안)	수정의결
	제2호 2015년도 예산(안)	수정의결
	제3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관 개정(안)	원안의결
	제4호 감사규정 개정(안)	수정의결

위와 같이 제50회 정기이사회 회의결과를 확인함.

2014. 12. 23.

구분	성명	구분	성명
의장	정재훈 (인)	이사	최승호 (인)
이사	차동형 (인)	이사	조규홍 (인)
이사	김창경 (인)	이사	김형준 (인)
이사	박경문 (인)	이사	박명현 (인)
이사	백강수 (인)	이사	안현실 (인)
이사	양승환 (인)	이사	이상직 (인)
이사	이종각 (인)	이사	최광숙 (인)
이사	최선 (인)	감사	이승원 (인)